```
Г
          [ 2010. 3.19] [ 22075 , 2010. 3.15, ] ( ) 02 - 2023 - 7513
1 ( ) <sup>r</sup>
. < 2005.11.1 >
                     ر " " ) 2 1 2
2 ( ) <sup>r</sup>
                      . < 2005.3.18, 2005.11.1, 2006.8.4, 2009.12.15 >
1. <sup>r</sup>
2. r
3. <sup>r</sup>
       1 10 د
2 1
          3
2005.11.1>
1.
2. <sup>r</sup>
3. 1 1
3 ( ) 2 1 8 " "
          . < 2001.7.7, 2004.5.25, 2005.11.1 >
1. 「」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
                       3
          (「」」2
2
                       2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2. <sup>r</sup>
                       1
3. <sup>r</sup>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
           가(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5. 「 가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
6. r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
4 (
      ) 2
                 2
1. ( ): •
2. ( ):
```

```
3. ( ): 1 2
[ 2008.6.30]
5 <2003.4.4>
           ) 6 2 4 "
6 (
7 <2003.4.4>
7 2(
                          ) 11 2 2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
             . < 2008.2.29, 2010.3.15 >
                           )
          1
                           2 1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
 . 가
                      3
[ 2003.4.4]
7 3(
             )
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2
  1
                           20
          가
  2
          2
                    .< 2008.2.29, 2010.3.15>
[ 2003.4.4]
8 (
             ) 15
     ) • •
. < 2003.4.4, 2005.11.1 >
      2
1.
2. r
3.
```

```
4. 3
                  1 1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5.11.1>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. <
9 (
              ) 15
1. 3 1
2.
   4
3.
   5
4.
   10
5.
   11
6.
   17
[ 2003.4.4]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 "
   2(
9
                 ) 15 2 1
   ") • 가
                      1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. < 2005.11.1 >
1.
2.
                      2005.11.1 >
1.
2.
3.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• 가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• 가
     .< 2005.11.1>
                      · 가 .< 2005.11.1>
[ 2003.4.4]
10 (
                   ) 16
10 2( ) 19 2
1.
                       : 5 500
```

```
: 3
 2.
 [
       2005.11.1]
 11 ( )
                  22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
       2008.6.30]
 [
          < 22075 ,2010. 3.15>
 1 (
              2010 3 19
        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. <
 2 (
              )
                 <16>
 <17>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
 7
      2 1 7
                  3 6
 <18> <187>
25
      8,600 이상~
                  10,000 미만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8,000
     10,000 이상~
                 12,000 미만
26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7,000
27
     12,000 이상~
                 15,000 미만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6,000
28
     15,000 이상~
                  20,000 미만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5,000
     20,000 이상~
                  25,000 미만
29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4,000
30
     25,000 이상~
                  30,000 미만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3,000
31
     30,000 이상~
                  35,000 미만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2,000
32
     35,000 이상~
                  40,000 미만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1,000
     40,000 이상
33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0,000
```

[별표 1] <신설 2003.4.4>

과징금 산정기준(제7조의2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영업정지 1월은 30일로 계산한다.
- 나.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당해 업소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신규사업·휴업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·월별 또는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.

2. 과징금 부과기준

등급	전년도 연간 총 매출금액	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
	(단위 : 백만원)	(단위 : 원)
1	30 미만	30,000
2	30 이상~ 100 미만	41,000
3	100 이상~ 200 미만	52,000
4	200 이상~ 350 미만	63,000
5	350 이상~ 510 미만	74,000
6	510 이상~ 680 미만	85,000
7	680 이상~ 860 미만	96,000
8	860 이상~ 1,040 미만	105,000
9	1,040 이상~ 1,240 미만	114,000
10	1,240 이상~ 1,460 미만	123,000
11	1,460 이상~ 1,710 미만	132,000
12	1,710 이상~ 2,000 미만	141,000
13	2,000 이상~ 2,300 미만	150,000
14	2,300 이상~ 2,600 미만	159,000
15	2,600 이상~ 3,000 미만	168,000
16	3,000 이상~ 3,400 미만	177,000
17	3,400 이상~ 3,800 미만	186,000
18	3,800 이상~ 4,300 미만	195,000
19	4,300 이상~ 4,800 미만	204,000
20	4,800 이상~ 5,400 미만	213,000
21	5,400 이상~ 6,000 미만	222,000
22	6,000 이상~ 6,700 미만	231,000
23	6,700 이상~ 7,500 미만	240,000
24	7,500 이상~ 8,600 미만	249,000

[별표 2] <개정 2008,6,30>

<u>과태료의 부과기준(</u>제11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횟수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.

2. 개별기준

위 반 행 위	근거법령	과태료
1. 법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 한 자	법 제22조제 1항제1호	30만원
2,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욕수 중 원수 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	- ' '	100만원
3.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욕수 중 욕조 수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 한 자		70만원
4. 법 제4조제3항 각 호 및 제7항을 위반하여 이용업 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	법 제22조 제2항제1호	50만원
5. 법 제4조제4항 각 호 및 제7항을 위반하여 미용업 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	법 제22조 제2항제2호	50만원
6. 법 제4조제5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세탁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	법 제22조제 2항제3호	30만원
7. 법 제4조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위생관리용역 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	법 제22조제 2항제4호	30만원
8. 법 제4조제7항을 위반하여 숙박업소의 시설 및 설 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	법 제22조제 1항제2호	50만원
9. 법 제4조제7항을 위반하여 목욕장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	법 제22조제 1항제3호	50만원
10.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	법 제22조제	70만원

이용 또는 미용업무를 행한 자 11. 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공 무원의 출입·검사, 기타 조치를 거부·방해 또는 기 피한 자		100만원
12.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위반한 자	법 제22조제 1항제5호	100만원
13. 법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 한 자	법 제22조제 1항제6호	70만원
14.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 니한 자	법 제22조제 2항제6호	20만원